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다23185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다231854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2. 4. 13 선고 2020나11646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16가소4825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A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근원

피고, 상고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강

판결선고 2022. 8. 25.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2. 4. 13. 선고 2020나1164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상고할 수 있는데, 상고이유 주장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주 심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오경미